영종 SK VIEW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분양광고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 칭합니다.), 운동시설**은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본주택 내 상담전화(☎ 1533-6330)를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 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2.08.05) 기준입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2,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따라 분양 호실의 20%(오피스텔), 10%(근린생활시설), 10%(운동시설)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2.08.05)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인천광역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합니다.**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2.08.05)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청약접수 및 추첨 :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의 경우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는 분양사업장(영종도 견본주택)에서 청약접수 및 임의추첨방식으로 입점자를 선정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지 않으니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의 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중구**는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매제한이 적용되고 거주자 우선공급이 적용됩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일 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동법 제 6조의3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본 오피스텔은 타입별 200%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현황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사업주체 홈페이지(https://yj-sk.co.kr)를 통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시	8월 10일(수)~8월 11일(목)	8월 17일(수) 16:00시 이후	8월 18일(목)~8월 19일(금) (10:00~16:00)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영종 SK VIEW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8-3 2층)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근린생활시설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거주자 우선분양	일반분양	거주자 우선분양	일반분양	
일 시	8월 22일(월) 08:00~16:00	8월 23일(화) 08:00~16:00	8월 22일(월) 18:00	8월 23일(화) 18:00	8월 24일(수) 10:00~16:00
방 법	지정 계좌 이체		현장 임의 추첨방식으로 선정		견본주택 방문계약
장 소	영종 SK VIEW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8-3 2층)				

※ 청약금을 지정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청약접수가 진행되니 청약자는 신청호실 및 성함을 정확히 기입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예시를 참조하여 착오 없이 입금하여야 합니다.

- 예시 : 호실 청약 105호 홍길동 → "105홍길동"

※ 1인 1호실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하며, 각 호실 별로 각각 입금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상기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시기 바라며, 입금 후 반드시 입금확인증을 제출 바랍니다.

※ 당첨자의 청약금은 계약금으로 대체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2022 - 영종관리과 - 분양신고 - 10호(2022.08.05)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2022 - 영종관리과 - 신축허가 - 32호(2022.03.31)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49-1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5,788.4000㎡ 중 오피스텔 대지지분 4,785.7439㎡, 근린생활시설 대지지분 604.3544㎡, 운동시설 대지지분 398.3017㎡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영종하늘도시), 경제자유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 건축물 연면적 : 53,487.1985㎡ 중 오피스텔 44,222.2432㎡, 근린생활시설 5,584.4832㎡, 운동시설 3,680.4721㎡
- 건축물 층별 용도 :
 - 지하 5~2층 : 주차장 및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
 - 지하 1층 : 운동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2~10층 : 오피스텔
- 공급규모 : 지하 5층 ~ 지상 10층 2개동 근린생활시설 24실, 운동시설 3실 및 오피스텔 총 432실
- 주차대수 : 총 509대 계획 (법정주차대수 오피스텔 432대, 근린생활시설 35대, 운동시설 23대)

■ 내진설계 등급 및 내진능력

- 「건축법」제48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 : 확보
- 「건축법」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 Ⅶ:0.204g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참조)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해당 없음
-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해당 없음.

■ 준공예정일 : 2025년 05월 말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준공일정은 추후통보)

■ 입주(입점)예정일 : 2025년 06월 말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및 입점 일정은 추후통보)

■ 입주자 사전방문 확인제도(오피스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1항10호의2에 따라 사용승인 전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사전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오피스텔)

[단위 : ㎡]

타 입	계	공급호실 수 (거주자 우선분양)	공급호실 수 (일반분양)	건축물 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벽체공용면적	지상층	기계/전기실 등	주차장	계약면적	

						공용면적				
49A	200	40	160	49.7043	3.1599	14.2994	3.4044	41.6977	112.2657	12.1494
49A1	25	5	20	49.7043	3.1599	14.2994	3.4044	41.6977	112.2657	12.1494
49B	16	3	13	49.7734	3.1644	14.3196	3.4093	41.7559	112.4226	12.1665
49C	2	1	1	49.7604	3.1636	14.3158	3.4084	41.7449	112.3931	12.1634
40A	8	1	7	40.4106	2.5692	11.6260	2.7679	33.9013	91.2750	9.8778
40A1	1	1	0	40.4106	2.5752	11.6432	2.7713	33.9146	91.3149	9.8797
39A	180	36	144	39.6433	2.5202	11.4049	2.7153	33.2574	89.5411	9.690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오피스텔)

[단위 : 원]

타입	동	층	향(라인)	공급호실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물비	부가세	계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시(입주지정기간 내)
											23.01.17	23.06.19	23.12.18	24.06.17	24.12.17	25.03.17	
49A	1동	2	남서(1~3호)	200	3	103,414,000	253,186,000	25,318,600	381,918,600	38,191,860	38,191,860	38,191,860	38,191,860	38,191,860	38,191,860	38,191,860	114,575,580
			남동(5~12호)		8	104,458,000	255,742,000	25,574,200	385,774,200	38,577,420	38,577,420	38,577,420	38,577,420	38,577,420	38,577,420	38,577,420	115,732,260
			서북(14호)		1	94,337,000	230,963,000	23,096,300	348,396,300	34,839,630	34,839,630	34,839,630	34,839,630	34,839,630	34,839,630	34,839,630	104,518,890
		3~4	남서(1~3호)		6	105,589,000	258,511,000	25,851,100	389,951,100	38,995,110	38,995,110	38,995,110	38,995,110	38,995,110	38,995,110	38,995,110	116,985,330
			남동(5~12호)		16	106,662,000	261,138,000	26,113,800	393,913,800	39,391,380	39,391,380	39,391,380	39,391,380	39,391,380	39,391,380	39,391,380	118,174,140
			서북(14호)		2	96,338,000	235,862,000	23,586,200	355,786,200	35,578,620	35,578,620	35,578,620	35,578,620	35,578,620	35,578,620	35,578,620	106,735,860
		5~7	남서(1~3호)		9	107,793,000	263,907,000	26,390,700	398,090,700	39,809,070	39,809,070	39,809,070	39,809,070	39,809,070	39,809,070	39,809,070	119,427,210
			남동(5~12호)		24	108,895,000	266,605,000	26,660,500	402,160,500	40,216,050	40,216,050	40,216,050	40,216,050	40,216,050	40,216,050	40,216,050	120,648,150
			서북(14호)		3	98,339,000	240,761,000	24,076,100	363,176,100	36,317,610	36,317,610	36,317,610	36,317,610	36,317,610	36,317,610	36,317,610	108,952,830
		8~9	남서(1~3호)		6	109,997,000	269,303,000	26,930,300	406,230,300	40,623,030	40,623,030	40,623,030	40,623,030	40,623,030	40,623,030	40,623,030	121,869,090
			남동(5~12호)		16	111,099,000	272,001,000	27,200,100	410,300,100	41,030,010	41,030,010	41,030,010	41,030,010	41,030,010	41,030,010	41,030,010	123,090,030
			서북(14호)		2	100,340,000	245,660,000	24,566,000	370,566,000	37,056,600	37,056,600	37,056,600	37,056,600	37,056,600	37,056,600	37,056,600	111,169,800
	2동	2	동북(1~3호)		3	99,238,000	242,962,000	24,296,200	366,496,200	36,649,620	36,649,620	36,649,620	36,649,620	36,649,620	36,649,620	36,649,620	109,948,860
			서북(5~13호)		9	99,238,000	242,962,000	24,296,200	366,496,200	36,649,620	36,649,620	36,649,620	36,649,620	36,649,620	36,649,620	36,649,620	109,948,860
			남동(14호)		1	99,296,000	243,104,000	24,310,400	366,710,400	36,671,040	36,671,040	36,671,040	36,671,040	36,671,040	36,671,040	36,671,040	110,013,120
		3~4	동북(1~3호)		6	101,326,000	248,074,000	24,807,400	374,207,400	37,420,740	37,420,740	37,420,740	37,420,740	37,420,740	37,420,740	37,420,740	112,262,220
			서북(5~13호)		18	101,326,000	248,074,000	24,807,400	374,207,400	37,420,740	37,420,740	37,420,740	37,420,740	37,420,740	37,420,740	37,420,740	112,262,220
			남동(14호)		2	101,413,000	248,287,000	24,828,700	374,528,700	37,452,870	37,452,870	37,452,870	37,452,870	37,452,870	37,452,870	37,452,870	112,358,610
		5~7	동북(1~3호)		9	103,443,000	253,257,000	25,325,700	382,025,700	38,202,570	38,202,570	38,202,570	38,202,570	38,202,570	38,202,570	38,202,570	114,607,710
			서북(5~13호)		27	103,443,000	253,257,000	25,325,700	382,025,700	38,202,570	38,202,570	38,202,570	38,202,570	38,202,570	38,202,570	38,202,570	114,607,710
			남동(14호)		3	103,530,000	253,470,000	25,347,000	382,347,000	38,234,700	38,234,700	38,234,700	38,234,700	38,234,700	38,234,700	38,234,700	114,704,100
		8~9	동북(1~3호)		6	105,560,000	258,440,000	25,844,000	389,844,000	38,984,400	38,984,400	38,984,400	38,984,400	38,984,400	38,984,400	38,984,400	116,953,200
			서북(5~13호)		18	105,560,000	258,440,000	25,844,000	389,844,000	38,984,400	38,984,400	38,984,400	38,984,400	38,984,400	38,984,400	38,984,400	116,953,200
			남동(14호)		2	105,618,000	258,582,000	25,858,200	390,058,200	39,005,820	39,005,820	39,005,820	39,005,820	39,005,820	39,005,820	39,005,820	117,017,460

49A1	1동	10	남서(1~3호)	25	3	124,294,000	304,306,000	30,430,600	459,030,600	45,903,060	45,903,060	45,903,060	45,903,060	45,903,060	45,903,060	45,903,060	137,709,180	
			남동(5~12호)		8	125,541,000	307,359,000	30,735,900	463,635,900	46,363,590	46,363,590	46,363,590	46,363,590	46,363,590	46,363,590	46,363,590	139,090,770	
			서북(14호)		1	113,390,000	277,610,000	27,761,000	418,761,000	41,876,100	41,876,100	41,876,100	41,876,100	41,876,100	41,876,100	41,876,100	125,628,300	
	2동	10	동북(1~3호)		3	119,277,000	292,023,000	29,202,300	440,502,300	44,050,230	44,050,230	44,050,230	44,050,230	44,050,230	44,050,230	44,050,230	132,150,690	
			서북(5~13호)		9	119,277,000	292,023,000	29,202,300	440,502,300	44,050,230	44,050,230	44,050,230	44,050,230	44,050,230	44,050,230	44,050,230	132,150,690	
			남동(14호)		1	119,364,000	292,236,000	29,223,600	440,823,600	44,082,360	44,082,360	44,082,360	44,082,360	44,082,360	44,082,360	44,082,360	132,247,080	
49B	1동	2	남동(4호)	16	1	102,486,000	250,914,000	25,091,400	378,491,400	37,849,140	37,849,140	37,849,140	37,849,140	37,849,140	37,849,140	37,849,140	113,547,420	
		3~4			2	104,690,000	256,310,000	25,631,000	386,631,000	38,663,100	38,663,100	38,663,100	38,663,100	38,663,100	38,663,100	38,663,100	115,989,300	
		5~7			3	106,865,000	261,635,000	26,163,500	394,663,500	39,466,350	39,466,350	39,466,350	39,466,350	39,466,350	39,466,350	39,466,350	118,399,050	
		8~9			2	109,040,000	266,960,000	26,696,000	402,696,000	40,269,600	40,269,600	40,269,600	40,269,600	40,269,600	40,269,600	40,269,600	120,808,800	
	2동	2	서북(4호)		1	97,382,000	238,418,000	23,841,800	359,641,800	35,964,180	35,964,180	35,964,180	35,964,180	35,964,180	35,964,180	35,964,180	107,892,540	
		3~4			2	99,441,000	243,459,000	24,345,900	367,245,900	36,724,590	36,724,590	36,724,590	36,724,590	36,724,590	36,724,590	36,724,590	110,173,770	
		5~7			3	101,529,000	248,571,000	24,857,100	374,957,100	37,495,710	37,495,710	37,495,710	37,495,710	37,495,710	37,495,710	37,495,710	112,487,130	
		8~9			2	103,588,000	253,612,000	25,361,200	382,561,200	38,256,120	38,256,120	38,256,120	38,256,120	38,256,120	38,256,120	38,256,120	114,768,360	
49C	1동	10	남동(4호)	2	1	123,482,000	302,318,000	30,231,800	456,031,800	45,603,180	45,603,180	45,603,180	45,603,180	45,603,180	45,603,180	45,603,180	136,809,540	
	2동	10	서북(4호)		1	117,305,000	287,195,000	28,719,500	433,219,500	43,321,950	43,321,950	43,321,950	43,321,950	43,321,950	43,321,950	43,321,950	129,965,850	
40A	1동	2	남동(13호)	8	1	84,912,000	207,888,000	20,788,800	313,588,800	31,358,880	31,358,880	31,358,880	31,358,880	31,358,880	31,358,880	31,358,880	94,076,640	
		3~4			2	86,739,000	212,361,000	21,236,100	320,336,100	32,033,610	32,033,610	32,033,610	32,033,610	32,033,610	32,033,610	32,033,610	96,100,830	
		5~7			3	88,537,000	216,763,000	21,676,300	326,976,300	32,697,630	32,697,630	32,697,630	32,697,630	32,697,630	32,697,630	32,697,630	98,092,890	
		8~9			2	90,335,000	221,165,000	22,116,500	333,616,500	33,361,650	33,361,650	33,361,650	33,361,650	33,361,650	33,361,650	33,361,650	100,084,950	
40A1	1동	10	남동(13호)	1	1	102,080,000	249,920,000	24,992,000	376,992,000	37,699,200	37,699,200	37,699,200	37,699,200	37,699,200	37,699,200	37,699,200	113,097,600	
39A	1동	2	서북(15~21호)	180	7	75,226,000	184,174,000	18,417,400	277,817,400	27,781,740	27,781,740	27,781,740	27,781,740	27,781,740	27,781,740	27,781,740	83,345,220	
			동북(22~24호)		3	75,226,000	184,174,000	18,417,400	277,817,400	27,781,740	27,781,740	27,781,740	27,781,740	27,781,740	27,781,740	27,781,740	83,345,220	
		3~4	서북(15~21호)		14	76,850,000	188,150,000	18,815,000	283,815,000	28,381,500	28,381,500	28,381,500	28,381,500	28,381,500	28,381,500	28,381,500	85,144,500	
			동북(22~24호)		6	76,850,000	188,150,000	18,815,000	283,815,000	28,381,500	28,381,500	28,381,500	28,381,500	28,381,500	28,381,500	28,381,500	85,144,500	
		5~7	서북(15~21호)		21	78,445,000	192,055,000	19,205,500	289,705,500	28,970,550	28,970,550	28,970,550	28,970,550	28,970,550	28,970,550	28,970,550	86,911,650	
			동북(22~24호)		9	78,445,000	192,055,000	19,205,500	289,705,500	28,970,550	28,970,550	28,970,550	28,970,550	28,970,550	28,970,550	28,970,550	86,911,650	
		8~10	서북(15~21호)		21	80,040,000	195,960,000	19,596,000	295,596,000	29,559,600	29,559,600	29,559,600	29,559,600	29,559,600	29,559,600	29,559,600	88,678,800	
			동북(22~24호)		9	80,040,000	195,960,000	19,596,000	295,596,000	29,559,600	29,559,600	29,559,600	29,559,600	29,559,600	29,559,600	29,559,600	88,678,800	
	2동	2	남동(15~21호)		7	79,199,000	193,901,000	19,390,100	292,490,100	29,249,010	29,249,010	29,249,010	29,249,010	29,249,010	29,249,010	29,249,010	87,747,030	
			남서(22~24호)		3	78,416,000	191,984,000	19,198,400	289,598,400	28,959,840	28,959,840	28,959,840	28,959,840	28,959,840	28,959,840	28,959,840	86,879,520	
		3~4	남동(15~21호)		14	80,881,000	198,019,000	19,801,900	298,701,900	29,870,190	29,870,190	29,870,190	29,870,190	29,870,190	29,870,190	29,870,190	89,610,570	
			남서(22~24호)		6	80,069,000	196,031,000	19,603,100	295,703,100	29,570,310	29,570,310	29,570,310	29,570,310	29,570,310	29,570,310	29,570,310	88,710,930	
		5~7	남동(15~21호)		21	82,563,000	202,137,000	20,213,700	304,913,700	30,491,370	30,491,370	30,491,370	30,491,370	30,491,370	30,491,370	30,491,370	91,474,110	
			남서(22~24호)		9	81,751,000	200,149,000	20,014,900	301,914,900	30,191,490	30,191,490	30,191,490	30,191,490	30,191,490	30,191,490	30,191,490	90,574,470	
		8~10	남동(15~21호)		21	84,245,000	206,255,000	20,625,500	311,125,500	31,112,550	31,112,550	31,112,550	31,112,550	31,112,550	31,112,550	31,112,550	93,337,650	
			남서(22~24호)		9	83,404,000	204,196,000	20,419,600	308,019,600	30,801,960	30,801,960	30,801,960	30,801,960	30,801,960	30,801,960	30,801,960	92,405,880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단위 : ㎡]

층		호수	건축물 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계/전기실 등	주차장	계약면적	
지하 1층	근린 생활 시설	101	55.4925	9.1185	0.6709	38.5742	103.8561	11.2393
		102	136.2900	22.3950	1.6478	94.7386	255.0714	27.6039
		103	91.4375	15.0249	1.1055	63.5605	171.1284	18.5195
		104	84.9406	13.9573	1.0270	59.0444	158.9693	17.2037
		105	520.7450	85.5683	6.2959	361.9829	974.5921	105.4707
	운동 시설	106	633.5719	94.0573	7.5556	434.4114	1169.5962	126.5740
		107	1018.3850	151.1849	12.1447	698.2602	1879.9748	203.4514
		108	341.7600	50.7362	4.0757	234.3292	630.9011	68.2763
1층	101동	101	498.5000	81.9129	6.0270	346.5200	932.9599	100.9651
		102	51.9800	8.5413	0.6285	36.1326	97.2824	10.5279
		103	51.9800	8.5413	0.6285	36.1326	97.2824	10.5279
		104	76.0300	12.4932	0.9192	52.8504	142.2928	15.3990
		105	73.3900	12.0594	0.8873	51.0153	137.3520	14.8643
		106	78.7600	12.9417	0.9522	54.7481	147.4020	15.9519
		107	78.7600	12.9417	0.9522	54.7481	147.4020	15.9519
		108	94.3525	15.5039	1.1407	65.5869	176.5840	19.1100
		109	46.3775	7.6207	0.5607	32.2382	86.7971	9.3932
		110	42.4000	6.9671	0.5126	29.4733	79.3530	8.5876
		111	42.4000	6.9671	0.5126	29.4733	79.3530	8.5876
	102동	112	84.0750	13.8151	1.0165	58.4426	157.3492	17.0284
		113	84.0750	13.8151	1.0165	58.4426	157.3492	17.0284
		114	113.2800	18.6140	1.3696	78.7438	212.0074	22.9435
		115	57.7220	9.4848	0.6979	40.1240	108.0287	11.6909
		116	73.3460	12.0521	0.8868	50.9846	137.2695	14.8554
		117	133.3480	21.9116	1.6122	92.6936	249.5654	27.0080
		118	212.4800	34.9145	2.5689	147.7002	397.6636	43.0353
		119	201.7450	33.1505	2.4391	140.2381	377.5727	40.8610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단위 : 원]

층		호수	분양금액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입점 시 (입점기간 내)
								23.12.18	24.06.17	24.12.17	25.03.17	
지하 1층	근린 생활	101	68,759,000	168,341,000	16,834,100	253,934,100	25,393,410	25,393,410	25,393,410	25,393,410	25,393,410	126,967,050

	시설	102	168,867,000	413,433,000	41,343,300	623,643,300	62,364,330	62,364,330	62,364,330	62,364,330	62,364,330	311,821,650	
		103	113,303,000	277,397,000	27,739,700	418,439,700	41,843,970	41,843,970	41,843,970	41,843,970	41,843,970	209,219,850	
		104	105,241,000	257,659,000	25,765,900	388,665,900	38,866,590	38,866,590	38,866,590	38,866,590	38,866,590	194,332,950	
		105	645,221,000	1,579,679,000	157,967,900	2,382,867,900	238,286,790	238,286,790	238,286,790	238,286,790	238,286,790	1,191,433,950	
	운동시설	106	774,300,000	1,895,700,000	189,570,000	2,859,570,000	285,957,000	285,957,000	285,957,000	285,957,000	285,957,000	1,429,785,000	
		107	1,244,622,000	3,047,178,000	304,717,800	4,596,517,800	459,651,780	459,651,780	459,651,780	459,651,780	459,651,780	2,298,258,900	
		108	417,687,000	1,022,613,000	102,261,300	1,542,561,300	154,256,130	154,256,130	154,256,130	154,256,130	154,256,130	771,280,650	
1층	101동	101	957,000,000	2,343,000,000	234,300,000	3,534,300,000	353,430,000	353,430,000	353,430,000	353,430,000	353,430,000	1,767,150,000	
		102	247,486,000	605,914,000	60,591,400	913,991,400	91,399,140	91,399,140	91,399,140	91,399,140	91,399,140	456,995,700	
		103	247,486,000	605,914,000	60,591,400	913,991,400	91,399,140	91,399,140	91,399,140	91,399,140	91,399,140	456,995,700	
		104	349,508,000	855,692,000	85,569,200	1,290,769,200	129,076,920	129,076,920	129,076,920	129,076,920	129,076,920	645,384,600	
		105	337,386,000	826,014,000	82,601,400	1,246,001,400	124,600,140	124,600,140	124,600,140	124,600,140	124,600,140	623,000,700	
		106	362,065,000	886,435,000	88,643,500	1,337,143,500	133,714,350	133,714,350	133,714,350	133,714,350	133,714,350	668,571,750	
		107	362,065,000	886,435,000	88,643,500	1,337,143,500	133,714,350	133,714,350	133,714,350	133,714,350	133,714,350	668,571,750	
		108	433,753,000	1,061,947,000	106,194,700	1,601,894,700	160,189,470	160,189,470	160,189,470	160,189,470	160,189,470	800,947,350	
		109	220,806,000	540,594,000	54,059,400	815,459,400	81,545,940	81,545,940	81,545,940	81,545,940	81,545,940	407,729,700	
		110	201,869,000	494,231,000	49,423,100	745,523,100	74,552,310	74,552,310	74,552,310	74,552,310	74,552,310	372,761,550	
		111	201,869,000	494,231,000	49,423,100	745,523,100	74,552,310	74,552,310	74,552,310	74,552,310	74,552,310	372,761,550	
	102동	112	372,708,000	912,492,000	91,249,200	1,376,449,200	137,644,920	137,644,920	137,644,920	137,644,920	137,644,920	688,224,600	
		113	372,708,000	912,492,000	91,249,200	1,376,449,200	137,644,920	137,644,920	137,644,920	137,644,920	137,644,920	688,224,600	
		114	502,164,000	1,229,436,000	122,943,600	1,854,543,600	185,454,360	185,454,360	185,454,360	185,454,360	185,454,360	927,271,800	
		115	156,368,000	382,832,000	38,283,200	577,483,200	57,748,320	57,748,320	57,748,320	57,748,320	57,748,320	288,741,600	
		116	192,676,000	471,724,000	47,172,400	711,572,400	71,157,240	71,157,240	71,157,240	71,157,240	71,157,240	355,786,200	
		117	350,291,000	857,609,000	85,760,900	1,293,660,900	129,366,090	129,366,090	129,366,090	129,366,090	129,366,090	646,830,450	
		118	523,276,000	1,281,124,000	128,112,400	1,932,512,400	193,251,240	193,251,240	193,251,240	193,251,240	193,251,240	966,256,200	
		119	496,828,000	1,216,372,000	121,637,200	1,834,837,200	183,483,720	183,483,720	183,483,720	183,483,720	183,483,720	917,418,600	

■ 거주자 우선 분양

- 본 건축물의 공급지역(인천광역시 중구)은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오피스텔은 건축물 분양분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오피스텔)에서,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은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에서 분양신고일(2022.08.05)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 신청한 자 중 인천광역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합니다. 단, 거주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인천광역시 거주지역 당첨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검토 후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가 되어 당첨 사실이 취소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청약 신청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호실의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당첨자가 선정되며,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의 경우 현장 임의추첨방식으로 호실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공통사항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숙지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총 분양금액은 동, 타입,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분양금액은 각 호실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구. 등록세포함)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본 건축물은 복합단지로 동일 블록 내에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계약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계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법 = 형별 면적(㎡) × 0.3025)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반올림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전용면적은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각 용도별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오피스텔 : 벽체, 복도 및 계단, 로비, 주민공동시설 등 /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 계단 및 승강기홀, 화장실 등)은 일부 공용면적으로 각용도 면적에 산입하고, 전체용도가 사용하는 공용부분(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1층 및 1층 통로 및 복도, 관리사무소, 자전거 보관소 등)은 전체 공용면적으로 각 용도별면적(전용+일부공용)의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각 용도별 일부 공용면적은 각 호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각 용도에 배분된 전체공용면적은 각 호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전체 공용면적은 각 호별로 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체 공용부분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각 용도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 동일 전용면적을 가진 단위호실 타입 간에도 주동구성에 따라 호실외벽의 두께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복합적으로 계획되어 있어 각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대지면적을 분할하되, 소수점 넷째짜리 표현하였으며,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각 실별 대지지분은 각 용도별 대지지분을 각 호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정리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 시 면적이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 및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단, 단수정리를 위한 오차는 일부 호실에 할애하였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지분에는 전체사업부지(5,788.4000㎡) 내 공개공지면적(583.4300㎡)에 해당하는 지분이 각 호별 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며,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허가도서 확인 등을 통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는 지하5층 ~ 10층(지붕층)까지 총 4대가 운영되며,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의 엘리베이터는 지하 5층부터 10층(지붕층)까지 운영하는 별도의 엘리베이터 2대가 설치됩니다.
- 공급대상은 432실(오피스텔), 24실(근린생활시설), 3실(운동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신청 시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점(당배소매인포함)은 101동 107호, 108호에 한하며, 본 호실 외 다른 호실에는 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은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단,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 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가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외국인이 본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①항에 의거하여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 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은 공사감리자의 공정 확인서에 의한 건축공사비의 50% 이상의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공사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Ⅱ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오피스텔

■ 오피스텔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하여 분양호실 20%를 분양신고일(2022.08.05)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우선 선정합니다.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청약 신청 시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청약해야 우선분양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우선공급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일반 청약자에 포함합니다.)
- 단,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관련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검토 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도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 모집광고일(2022.08.05)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실(건)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신청 타입별 200%의 예비당첨자를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오피스텔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 시	8월 10일(수)~8월 11일(목)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 영업시간까지)	8월 17일(수) 16:00시 이후	8월 18일(목)~8월 19일(금) (10:00~16:00)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유형(군,타입)별 무작위 결정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영종 SK VIEW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8-3 2층)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 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인 우리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거주자 우선분양 선택(선택사항), 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 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내용
모든 타입 공통	3,000,000원 (금 삼백만 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오피스텔 청약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우리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td></tr>
<tr><td></td><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법인 신청 시	• 청약신청서(우리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창구접수는 대행은행인 우리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2.08.0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분양사업자 등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청약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타입별 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신청 타입별 200%를 무작위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2년 8월 17일(수) 16:00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오피스텔 청약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오피스텔의 당첨자를 선정

동·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타입별 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타입별 200%의 예비당첨자를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오피스텔 청약당첨자에 대한 안내사항

당첨자 계약기간 준수	• 반드시 지정된 당첨자 계약 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 납부 완료 및 계약 구비서류를 준비 후 계약장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관련법령에 의거 자격 제한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장소 미방문,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부정 당첨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사업주체가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함.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신청 타입별 200%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 시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함 • 한국부동산원 추첨을 통해 당첨된 청약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청약 후 낙첨된 청약자는 사업자의 수의계약 공급 단계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공급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오피스텔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예비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본 근린생활시설은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하여 분양호실 1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우선 선정합니다.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청약 신청 시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청약해야 우선분양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단,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관련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검토 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도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 모집광고일(2022.08.05)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은 같은 호실일 경우 1인당 1개 호실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같은 호실 1인 2개 호실 이상 접수 시 모두 무효처리)
- 청약신청은 호실별로 접수하고 호실은 견본주택에서 추첨하여 결정됩니다.
- 미청약 및 미분양 호실 또는 당첨자의 계약포기 호실에 대해서는 시기 및 방식 등과 관계없이 사업관계자(사업주체)가 임의로 호실을 통합 또는 개별 분리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2항 규정 등을 통하여 사업관계자(사업주체)가 임의로 호실을 통합 또는 개별 분리하여 분양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금 납부 및 청약 접수기간	청약 추첨	당첨자 발표	계약기간	장소	비고
거주자 우선분양	2022. 08. 22(월) 08:00 ~ 16:00	2022. 08. 22(월) 17:00 ~ 17:50	2022. 08. 22(월) 18:00	2022. 08. 24(수) 10:00~16:00	영종 SK VIEW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8-3 2층) 대표번호 1533-6330	※ 낙첨자 청약금 환불기준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금융기관 영업일 기준 3주 이내
일반분양	2022. 08. 23(화) 08:00 ~ 16:00	2022. 08. 23(화) 17:00 ~ 17:50	2022. 08. 23(화) 18:00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청약신청방법

1)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본인 청약 시	1. 청약신청서 2. 청약신청금 무통장 입금증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4. 본인 인감도장 5.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자 본인 명의) / 낙첨시 환불신청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법인 청약 시	1. 청약신청서 2. 청약신청금 무통장 입금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인감도장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용도 : 근린생활시설 청약신청용, 운동시설 청약신청용)

	6.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자 본인명의) / 낙첨시 환불신청서 7. 법인대표이사 본인 계약 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 법률상 토지취득 허가서
제3자 대리 청약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근린생활시설 청약 위임용, 운동시설 청약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내 양식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인감도장

※ 낙첨자의 청약금 환불은 청약 신청 시 환불계좌로 등록한 본인(법인)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음.)

2)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금융기관	청약신청금	납부계좌	예금주	수납방법
우리은행	10,000,000원 (금 일천만 원)	**1005 - 104 -377126**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지정계좌 이체

• 청약신청금액 : 10,000,000원(금 일천만 원)

• 청약자는 신청호실 및 성함을 정확히 기입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예시를 참조하여 착오 없이 입금하여야 합니다.

※ 예시 : 호실 청약 105호 홍길동 → “105홍길동”

• 1인 1호실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하며, 각 호실 별로 각각 입금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상기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시기 바라며, 입금 후 반드시 입금확인증을 제출 바랍니다.

• 당첨자의 청약금은 계약금으로 대체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확인은 견본주택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청약추첨 및 당첨자 발표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 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구분	추첨일시	당첨자발표	추첨 및 당첨자 발표 장소
거주자우선분양	2022. 08. 22(월) 17:00 ~ 17:50	2022. 08. 22(월) 18:00	영종 SK VIEW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8-3 2층) 대표번호 1533-6330
일반분양	2022. 08. 23(화) 17:00 ~ 17:50	2022. 08. 23(화) 18:00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 환불기간 : 당첨자 계약일 이후 금융기관 영업일 기준 3주 이내 (단,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환불방법
 - 낙첨자의 청약신청금 환불은 금품분실 및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약 시 제출한 청약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처리합니다.
 (환불계좌 오류 등 송금 불능 사유 발생 시 환불일자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낙첨 고객의 경우는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 바랍니다.
 - 환불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정당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됩니다.
- 환불관련 문의 : 낙첨자의 청약신청금의 환불은 견본주택에서 접수 받은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청약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환불에 따른 시간이 소요됨을 양해바라며, 환불관련 문의는 1533-63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오피스텔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2년 8월 18일(목)~2022년 8월 19일(금)	10:00~16:00	영종 SK VIEW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8-3 2층)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당첨자(오피스텔) 추첨 및 계약일시**
 - **예비당첨자 추첨일 : 2022년 8월 20일(토) 10:00 ~ 12:00**
 - **예비당첨자 계약일 : 2022년 8월 20일(토) 13:00 ~ 17:00**
 - **예비당첨자 추첨 및 계약 장소 : 영종 SK VIEW 견본주택(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8-3 2층)**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2년 8월 24일(수)	10:00~16:00	영종 SK VIEW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8-3 2층)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아래에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래에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오피스텔	**우리은행**	196201 - 04 - 294806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동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1-1001홍길동)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우리은행**	196201 - 04 - 294806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동 “117호” 당첨자 홍길순“ → 1-117홍길순)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공급)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예금주 케이비부동산신탁(주)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한 시행수탁사로서 분양대금을 관리합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에서 해당 호실을 타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본인 계약 시	1.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및 청약신청금 입금증 2. 계약금(계약금에서 청약금을 감한 금액) 무통장 입금증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4. 계약자 인감도장 5. 계약자 인감증명서 1부 (용도 :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 계약용) 6.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법인 계약 시	1.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및 청약신청금 입금증 2. 계약금(계약금에서 청약금을 감한 금액) 무통장 입금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인감도장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용도 :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 계약용) 6. 법인 등기부등본 1부 7. 법인대표이사 본인 계약 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 법률상 토지취득 허가서
제3자 대리 계약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내 양식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인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2.08.0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청약 신청 시와 동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 일정

1) 오피스텔

계약금	중도금						잔금
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30%
계약 시	2023.01.17	2023.06.19	2023.12.18	2024.06.17	2024.12.17	2025.03.17	입주 시 (입주지정기간 내)

2)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계약금	중도금				잔금
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0%
계약시	2023.12.18	2024.06.17	2024.12.17	2025.03.17	입점 시 (입점지정기간 내)

• 지정된 납부일(중도금은 공급계약서 지정일 또는 잔금은 별도 지정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동·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입금자 표기 예시 : 1동 701호 홍길동 : 1-701홍길동 / 2동 1006호 홍길순 : 2-1006홍길순

• 납부기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납부기일은 익일(은행 영업일)로 합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계약 체결 시에 납부합니다.

• 중도금의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당첨된 동·호실을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서는 중도금 및 잔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위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당일 분양계약서를 작성 및 서명하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분양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인지세 납부를 이행해야 합니다.(인지세 계약자 부담)
- 인지세 납부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며 가산세 부과 시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법정납부기한(계약체결일)후, 당일 미납부 시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200, 6개월 초과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300 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전자주소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에게 서면(주민등록표 등 · 초본 포함)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및 계약은 취소하고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 및 각종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분양광고일 현재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 · 허가 관청의 주관사항으로 사업주체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명칭, 조경, 세부 식재계획 및 외부색채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계약 체결 시, 청약 당첨자의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하며, 공동명의는 불가합니다.
- 청약 신청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인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본 건축물은 개정된「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분양목적물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 · 군 · 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시 시행위탁사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의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본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을 계약할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의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오피스텔 배치구조 및 동·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며, 이로 인해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을 준수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의 입점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제1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로 인해 입주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 및 본 분양광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추후 별도 안내 예정)을 통해 융자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시 무이자조건으로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오피스텔), 총 분양대금의 40% 범위 내(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에서 시행위탁자가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대출이자를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 하에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고, 대신 납부하는 기한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그 이후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관계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호실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관계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 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대출 불가 시 중도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시행위탁자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입점)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해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수분양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분양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IV 기타 계약자안내

■ 오피스텔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내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인정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함)
-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계약자는 사업관계자(시행수탁사,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의 승인을 얻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점유자를 포함한다)은 계약 및 분양 과정에서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단, 분양대금의 연체가 있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집니다.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법령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사업관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에 따른 승인신청 시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재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관계자(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원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 준공예정일 : 2025년 05월 말 준공 예정

- 준공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준공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입주(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의 경우 '입점'을 의미하며, 이상·이하 같습니다.)예정일 : 2025년 06월 말 입주 예정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 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 및 사용승인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사항

• 본 건축물은 시행위탁자 ㈜운서원, 시행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시공사 SK에코플랜트(주)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공급하는 사업으로 공급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시행위탁자인 ㈜운서원이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건축주는 위탁자인 ㈜운서원이고,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의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분양대금계좌(해당 호실 가상계좌 입금 포함)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대금은 납부 효력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운서원과 케이비부동산신탁(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수분양자로 개별 소유권이전 등기 종료 시 매도인으로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수탁자(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됩니다.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 PF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수분양자)은 수탁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관련 법령상 하자보수의 책임은 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있으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 브랜드·명칭 변경 포함) 교체 시 매수인(수분양자)은 사전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수탁자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관련 법령상 하자보수의 책임은 위착자 및 시공사에게,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 이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V 기타 유의사항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분양광고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 일반사항

구분	내용
공통사항	• 본 분양광고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본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법」및「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합니다. • 공급신청서의 [타입]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않고 분양광고상 [타입(㎡)]으로 기재하였으니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전용면적은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본 단지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이 용도별로 별도 구분되어 분양되는 시설이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 계약면적 외의 타 시설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 계획(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등)은 추후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 타용도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호실 상호간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관계자 분양오피스텔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오피스텔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오피스텔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사업부지 주변 주거단지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배치구조, 오피스텔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초등학생은 인근 학교로 배치 가능하며, 중·고등학생은 학교군 내 배치 가능합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상가용 실외기 등 설비는 지붕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옥상정원 및 개인정원 이용시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에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한 직, 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의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호실별 대지지분은 용도별 총 대지지분을 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호실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및 준공 시 확정측량,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오피스텔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건축물 분양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일부 호실은 시공 개선 및 품질 관리를 위한 현장 내 공사용 견본호실(목업)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주차장, 기타공용에 한함)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주차장, 기타공용에 한함)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의 공급가격은 각 호실의 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형별 공급금액의 상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중도금 대출,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대지주위의 공공공지 및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 질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취득세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본 오피스텔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용도제한 업종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중 잔금납부 개시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건축법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받으며, 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승인일 이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및 공법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도, 평면도, 및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 시 설치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으며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에 표현된 내용(부대시설, 드라이에어리어(DA), 한전패드,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분양안내, 유의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가 공급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공급계약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분실신고 후 전국일간지에 분실공고를 내고 2주일 후 공증받은 위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고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사업관계자 (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 소정의 양식에 따른 분실각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할 시에만 공급계약서(사본)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공급계약서 재발급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 일부 호실 또는 부대시설 전체 또는 일부는 현장사무실 및 창고, 샘플실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의 협의 및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분양대행사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대행사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변경 시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사업주체+계약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본 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각종 기구(조명/배선기구/전기통신함 등)의 설치위치 및 재질, 사양이 계약자에게 개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또는 해당 민원으로 인한 행정관청의 공사중단, 권고 등으로 시공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조정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지체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공사도중) 전 호실 내 무단출입 및 호실내부의 임의적인 촬영을 금지하며, 무단 촬영물의 유포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오피스텔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건축 품질 및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의 경우 공기 미순환 등으로 인해, E/V홀 내부 및 지하층으로 연결된 계단실, 지하주차장 외벽 및 구조물 등에 결로 및 습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각 용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조경 및 공용시설에 장비 반입구, 한전소유의 전기설비 설치공간(한전패드), 도시가스 관련 시설, 맨홀, 우수조, 실외기, 급배기구

	및 쓰레기 수거장, 재활용 창고(분리수거 공간) 등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냄새, 진동, 소음, 해충 사생활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지상 1층 외부공간은 조경시설 등으로 소음, 분진,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의 전기실, 기계실, 방재실(MDF실 포함)의 건축물 구획은 해당 실별로 1개소로 통합 구성합니다.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의 중앙감시장비(원격검침, 주차관제, 비상벨, CCTV, HEAD END, 전기차충전설비, 승강기 감시반등)는 지하 2층 방재실에 각 시스템별로 통합 구성합니다. • 전기차충전설비는 관련 법정 규정에 의해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NUGU Smart Home (SKT Smart Home)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NUGU Smart Home (SKT Smart Home)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NUGU Smart Home과 연동된 IoT 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NUGU Smart home (SKT Smart Home)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감재	• 본 분양광고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생산일자, 생산공장(지)에따라 이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재 중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 견본 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 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 용량, 탑승위치, 주동입면 등)은 건축허가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견본 주택에 미건립된 호실의 경우 계약 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건립호실과 다른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 및 숙지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제시된 창호(유리, 프레임)의 강도는 본 공사 시 층수 및 위치에 따라 바람에 의한 영향의 차이로 인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 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평면도 사진 등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건축허가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확인 및 양지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연출용 설비 배관, 배선포함),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등)은 사용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호실,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단지모형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등)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조명, 식재,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옥탑부 디자인, 주동/창호형태, 벽체마감, 디테일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동안 공개 후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전한 뒤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게 설치됩니다.(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용 소방시설입니다.)

분양홍보물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외벽의 줄눈 또는 리브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오피스텔 동 및 부대동, 단지 등 외부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 등은 본 공사 시 시공성 및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카달로그에 표현된 조감도, 투시도, 평면도, 배치도, 조명, 조경, 시설물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시공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 표현된 단위호실, 평면 등에 표현된 실의 규모 관련 치수 또는 면적 등은 제작 시에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오피스텔 외벽 색채는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DA, 한전패드, 조경 식재 및 시설물, 포장패턴 및 재료, 조명,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달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분양광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달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 완충녹지, 공공공지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원에는 별도의 시설물 및 조경이 설치되지 않고 건축 기본마감으로 조성되며, 홍보물의 이미지 및 모형은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 단지관련

구분	내용
공통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차이가 있으며,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계획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옹벽, 석축, 계단, 녹지 경사면 등이 설치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소유권자 및 임차인) 임의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동 주변에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의 배기구, 환기구 및 보일러 배기연도 등이 설치되어, 수증기 및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의 실외기가 동 인근(조경공간 또는 부대시설 상부 등)에 설치되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의 공공공지, 보도 및 가로수, 기타 시설 등은 CG와 모형이 현황 및 계획과 상이할 수 있으며, 개발 사업자 또는 지자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 또는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저층 호실	• 광장, 공개공지 등이 설치되며,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저층호실은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인접한 일부호실은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과 제연을 위한 시설물(DRY AREA), 쓰레기 이송장비 설비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호실 및 인접한 호실은 소음 및 악취, 조명 등에 의해 사생활권 및 환경권과 조망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층 호실	• 오피스텔 및 지붕, 옥탑층 및 측벽에는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이동통신중계기, 피뢰침, 경관조명, 태양광 및 시행자 또는 시공사 BI 사인물 등이 설치되거나 또는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 또는 최상층 호실은 소음, 눈부심, 환경적 영향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비용은 전체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 변경	• 본공사 시 시공여건 고려 혹은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오피스텔 주동과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색상, 옥상장식물,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디자인 (전반),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DA, 옹벽 등), 조경디자인(식재계획, 조경 바닥 디자인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DECK PLATE 등) 등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공법 등이 부위별로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일부 입주자의 개인 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디자인, 위치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출입구	• 남동측, 북서측에 오피스텔 주출입구 동당 각1개소(총2개소), 단지 남서 및 북동측에 근린생활시설 주출입구가 설치됩니다. • 본 건물 북서측에는 차량 출입구가 설치됩니다. • 본 단지는 차량 출입구로 진입 시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공동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차 출입구	• 주차 출입구의 인접 호실은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 자전거 보관소는 지상1층 북동측 공개공지 인근 및 지하1층(실내)에 설치되며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공용으로 지하2층 1개소가 설치되며, 지상1층 북동측 공개공지 인근에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해 자동이송시스템이 설치됩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재활용품 보관소 이용에 관련하여 입주 후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간의 협의에 따라 사용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 1층 및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이 설치되며,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 및 이용자 및 입점업종에 따른 조명, 소음,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하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운동시설은 추후 근린생활시설 등 기타용도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지관리	• 단지내 조경식재, 야간조명 등 단지내 공용설비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 규약에 따릅니다.
이사시 유의사항	• 입주시 단지 바닥마감, 창호형태 및 크기, 평면 형태, 입면 장식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여,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동설비 및 시스템

구분	내용
공용부 (계단실,엘리베이터,홀등)	• 엘리베이터는 승용6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엘리베이터의 정원산정 기준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따라 산정되어 그에 따라 본공사시 시공될 예정입니다. 단, 본공사시 개정된 관련규정을 따를 경우 인허가시 기승인된 정원산정 기준과 상이하게 시공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모형 및 도서를 통하여 엘리베이터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호실의 복도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 본 건물은 복합건물로서 지하2층~지하5층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용도별로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원활한 교통통제 및 운영을 위하여 혼용하여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지하주차장 사용구획 및 주차대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건물내 주차대수는 오피스텔 법정주차대수 432대, 근린생활시설 법정주차대수 35대, 운동시설 법정주차대수 23대를 근거로 총 509대로 계획하였습니다. • 지하 2층 주차장은 오피스텔 입주자 주차공간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이 함께 있습니다. • 단지내 오피스텔용 주차장은 지하2~지하5층에 설치되어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과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 단지내 지상1층 주차관제설비는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이용자와 겸용으로 이용합니다. •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 통합형이며, 지하층은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 등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 또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주차장은 비난방・비단열공간 계단실은 비난방공간으로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유효높이 확보를 위하여 일부 기둥, 보와 같은 구조체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및 지상 주차장에는 높이 2.3m 미만의 차량만 전층 출입이 가능하오니 이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주차공간은 높이 2.1m 미만의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며, 일부구간은 건축

	물의 구조 및 기계, 전기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천정고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비공간	• 오피스텔 지붕층에 태양광설비, 위성 안테나, 이동통신중계기,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또는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는 전문업체의 검토를 통해 적정한 위치에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환경적 영향과 소음발생,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및 지상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제연실 포함) 및 정화조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인접호실의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붕층에 오피스텔 공용 정화조 배기덕트,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공용(추가)배기덕트가 각각 설치됩니다. 이에 따라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라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DA	• 단지내 남서측(서측면), 북측 주차출입구, 북측 공개공지 인근에 지하주차장 및 기계/전기실 등의 환기 및 제연을 위한 DA(환기탑)이 설치되며, 인접 호실 및 저층부 호실과 단지 시설물 이용시 소음 및 진동, 냄새, 풍압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대 시설	• 주민공동시설은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시설이며, 용도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등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주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부대시설은 계약면적 상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의 공동시설이며, 단지의 특성상 용도별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간 협의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내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입주 후 오피스텔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간 협의가 필요하며, 이용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제출하거나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 및 기타 시설물의 설치로 인접호실에 일조, 조망, 소음, 진동, 냄새, 해충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리사무소는 지하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위치 및 용도에 따라 거리가 다소 멀어 접근이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에 인접한 호실의 경우 입주자 및 사용자의 해당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눈부심, 냄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적 영향과 사생활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부대시설 중 일부는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보수를 위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비실, 관리사무소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에서 시공하며, 가구 및 가전, 소모집기 및 비품은 별도 제공되지 않으므로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남서측 및 북동측에 공개공지가 설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간으로 임의로 시설물을 제거하거나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와 인접한 저층부 호실 및 인접호실은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폐기물 보관소는 지하2층에 설치되며, 저층부 호실 및 인접호실은 소음 및 진동, 냄새, 해충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공개공지에 설치되며, 여건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으로 대체되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설치 또는 미설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냉방 실외기는 해당시설 지상1층 외부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되며, 인접호실은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관련

구분	내용
면적 등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준공 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호실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용도별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오피스텔: 벽체, 복도 및 계단, 로비, 주민공동시설 등 /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 계단 및 승강기홀, 화장실 등)은 일부공용면적으로 각용도 면적에 산입하고, 전체용도가 사용하는 공용부분(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1층 및 1층 통로 및 복도, 관리사무소, 자전거 보관소등)은 전체 공용면적으로 각용도별면적(전용+일부공용)의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각 용도별 일부 공용면적은 각 호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각 용도에 배분된 전체공용면적은 각 호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오피스텔의 구조 및 성능 개선 등을 위해 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용면적 및 서비스면적, 내부구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주자의 실제 공급면적(공용면적, 계단실면적 등), 계약면적(부대시설,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대지지분 및 전용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공용부 면적(계단실, 주차장, 부대시설, 설비공간 등)은 본 공사 시 현장 여건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 내부도로 및 조경선, 조경공사, 건물외벽 마감공사 등을 포함한 단지 공사,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인·허가 과정이나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두께 및 현장여건에 따라 주동 저층부 석재구간에 해당하는 호실의 창호사이즈는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도시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의 외관 및 내부 디자인은 현장 여건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구조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향후 구조형식과 구조부재의(기둥, 보 등) 크기, 위치, 개수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층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입점어봉 및 용도변경은 오피스텔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유효높이 확보를 위하여 일부 기둥, 보와 같은 구조체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용 D/A, 제연휀룸 D/A, 쓰레기자동이동설비 등의 지상 돌출물 및 시설물의 위치 및 형태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여건에 따라 콘센트, 조명스위치 등의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분양가에 포함되는 항목(가구, 각종 등기구, 전자제품 등)은 개인적인 요구 및 취향에 따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 시 창호 사양 및 크기, 개폐 방식, 개폐 방향, 브랜드, 하드웨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사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가스정압시설 및 전기변압시설 등의 시설물이 입주자 동의 없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의 구성 및 평면/입면 구조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	공개 공지 등	• 본 단지 내 남서측 및 북동측에는 공개공지가 설치되며, 해당 면적에 대하여 구분 및 분할, 소유 및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내 설치되는 공개공지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입주민(실사용자 포함)만의 사용을 위한 외부인 차단 출입시설물 등의 설치행위를 일체해서는 안됩니다. • 공개공지에는 녹지대가 조성되어 수목이 식재됨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각 호실의 조망 간섭이 있을 수 있음으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배치 및 설계계획상 일부 시각적 간섭 및 공용시설 조명에 의해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도로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호실 및 저층부 호실은 소음 및 진동, 매연으로 인하여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접 대지	• 단지 북동측에는 도로 맞은편으로 약 4층 규모의 상가 및 주택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조망 등의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서측에는 고속도로 및 녹지 접하여,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조망 등의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남동측에는 공원이 위치하여, 이로 인한 소음 등의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서측에는 공공공지 및 42m도로와 건너편 대지에 건물이 신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조망 등의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 경계	•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간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옹벽, 화단 등의 구간 및 높이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대지와의 레벨 관계에 의하여 일부 출입구 부분에 계단 및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니 계약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인허가 및 관련 법규	•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2021년 12월 23일 최초 건축심의완료(2021년 제13회 건축위원회 심의), 2022년 03월 31일 최초 건축허가완료(2022-영종관리과-신축허가-32호)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 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접수일 또는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 초고속정보통신 및 홈네트워크 건물인증 관련하여 해당 건축물은 미인증 건축물입니다.

■ 단위세대 관련

구분	내용
공통 사항	• 주방 내 김치냉장고공간이 제공되지 않아 주방에 기존에 보유한 김치냉장고 설치가 어렵습니다. •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하며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호실내 올림공간(우물천정)의 천정고는 상부호실 및 당해층 설비배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호실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 또는 확대 되어 시공 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의 환기시스템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열교환장치 또는 동등이상의 사양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 및 사양,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내 전기분전반/통신단자함의 설치 위치 및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주방의 기본사양 가전류 외 고용량 가전제품(전기인덕션 등)의 추가 설치는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 호실별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호실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창호 및 외기노출벽면마감재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 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화장실(샤워부스 포함),현관 등의 단차 및 타일 줄눈의 모양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내부마감재(마루재, 타일, 도배지, 시트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피 시설	• 소방관진입창 및 완강기가 설치되는 복도는 화재 발생시 대피 및 소화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곳이므로, 물건적재 및 기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합니다. • 소방관 진입창 및 완강기 설치부분 창은 향후 입주 후 개별적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파손 등의 경우 관련 법규 및 인허가사항에 적합하게 보수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복도 3~10층에는 피난용 완강기가 설치되며, 향후 입주 후 개별적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 완강기 설치 위치는 홀수층, 짝수층에 따라 교차되어 설치됩니다. • 소방관 진입창은 소방관련 심의의견에 따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이색의 방충망 프레임을 설치, 여닫이창인 경우 한변의 길이가 20cm인 적색 역삼각형의 식별표기를 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방관 진입창에 대하여 외부 식별을 위한 표현 방법은 본공사 시 인허가청 및 소방서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구 공사	• 주방가구 및 신발장, 붙박이장 등의 가구 뒷면 및 바닥, 천정에는 바닥마감재 및 벽지, 천정지 등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에 제공되는 아일랜드는 이동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냉장고 개폐 시 주변 벽체 또는 가구와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실의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의 벽체의 마감 두께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길이는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의 마감은 설치 후 시간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발생되며, 자외선 및 각종 세제, 화학약품 등에 의해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호실내 설치되는 가구 악세서리, 힌지 등의 가구철물은 제품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호 공사	• 호실 내 설치되는 창호, 유리 및 손잡이의 형태, 열림방향, 색상, 제조사 등은 본공사 시 동질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부에 설치되는 철재문 및 방화문류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호실별, 층별, 침실별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호실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복도 내 창호에는 건축법시행령 51조에 의거하여 배연설비인 배연창(배연창개방장치 포함)이 설치되며, 배연창 상부 창틀에는 배연창개방장치가 설치됩니다. 그로 인해 창호 프레임에 브라켓 설치 및 설치를 위한 타공이 발생할 수 있고 미관저해, 창호개폐 및 환기가 불가하거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배연창(배연창개방장치 포함)의 색상 또는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규에 따라 배연창(배연창개방장치 포함)은 향후 입주 후 개별적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파손 등의 경우 관련 법규 및 인허가사항에 적합하게 보수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기/설비공사	• 견본주택 호실내 설치된 전기기구(조명기구, 조명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등) 설치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은 침실 또는 현관 주변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은 커버가 벽체보다 돌출되어 설치됩니다. •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벽체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및 렌지후드 직배기 덕트로 인하여 거실/침실 창호 상부 커튼박스 일부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 확장 및 비확장, 옵션에 따라 배선기구 및 전등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세대 내 스위치, 콘센트, 조명기구는 위치, 사양, 개소 등이 변경되거나 타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전기용량 3.3kW 초과 전기쿡탑, 전기레인지를 설치할 경우 입주자 별도 전기공사가 필요합니다. • 상가 제공 시설물 - 급수 20A 1개소(수도미터기 포함), 가스 15A 1개소(가스미터기 미포함), 바닥 배수구 75A, 천정형 냉난방기(EHP)1대, 전열교환기1대, 주방 배기덕트 1개소.

■ 기타 유의사항

구분	내용
기타사항	• 오피스텔의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 계약자의 판단하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추후 입주 시 임대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자 등으로 전환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 후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며, 계약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중도금 납부분부터 시행위탁사는 계약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단, 계약자는 사업자등록 시 시행위탁사에게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사실에 대한 미통보 및 통보지연, 사업자 미등록, 부가세 미신고 및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하여 계약자 본인의 책임이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의 보존 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입점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입주 후 하자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합니다.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에 입주·입점 후 옥외공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관청의「옥외공고 등 관리조례」및「옥외공고물 등 관리법」을 준수하여 관계부서의 승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상부세대 욕실배관이 하부세대 욕실 천장속에 설치되며, 상부세대 욕실배관 보수 시 하부세대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 실외기실은 비난방구역으로 보일러 및 배수배관의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위생기구류(수전, 도기 등),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등), 기타 마감자재(에어컨, 보일러, 쿡탑, 가스미터기 및 배관, 배수구, 스프링클러 헤드, 환기구, 점검구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 및 기계환기설비는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장치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내 거실 및 침실 등에 설치된 환기 디퓨져는 본 공사시 위치와 개소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배기는 외부 직배기방식이며, 배기휀은 고정압 정풍량 방식으로 외부 환경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 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 변경 및 대피공간 내 천정마감, 발코니 창호 높이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공사시 각 세대 내부에는 소방 등 관련 법규에 맞게 조정되어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장비가 설치됩니다. • 수도법에 따른 절수등급 의무화 설비위생기구류(일부 수전/양변기)에 대하여 기준등급의 시험수압 및 수량을 준수하여 설치하였습니다. • 상가 인테리어공사로 인해 소방시설 및 관련 시공물 변경 또는 살수장애 발생 시에는 관련 법규에 맞게 재시공 및 추가공사는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구조상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천정 상부는 오피스텔 위생배관이 형성되고,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를 철거 및 가림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한 유지보수가 필요할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30조, 『집합건물관리법』제9조2 및 동법시행령 제5조를 준용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회사명	㈜아도스건축사사무소	㈜서광이에프
감리금액	495,000,000원(부가세별도)	385,000,000원(부가세별도)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분양사업자(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등)

구분	회사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시행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110111-1348237
시공사	SK에코플랜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길 19 (수송동)	110111-0038805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운서원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1, 9층 (민락동)	280211-0222443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와이낫플래닝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비동 13층 1318~1323호(마곡동, 두산더랜드타워)	110111-4426246

※ 분양대행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 080129호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인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2022-영종관리과-신축허가-32호) 건축허가 완료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영종도 홍보관 : 인천관역시 중구 운서동 3088-3 2층
- 강남 홍보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7 (삼성동 77-1)
- 대표번호 : 1533-6330

※ 청약금 입금 확인 및 환불관련 문의는 1533-63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사이버 분양홍보관(홈페이지) 및 위치

- https://yj-sk.co.kr